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05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 출 일 : 2024년 8월 12일
라. 회 부 일 :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연장과 기금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관리 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안 제4조), '24.7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안 제7조 제1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제2항)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제4항)과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와 관련된(안 제12조)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기금운용관 : <u>기획조정실장</u></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사무 중 ----- ----- 포함) 및 ----- ----- -----</p> <p>1. ----- <u>도시공간본부장</u></p>

현 행	개 정 안
<p>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자산담당관</p> <p>3. 기금출납원 :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p> <p>② (생략)</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 4.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p> <p>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p>	<p>2. ----- 도시계획과장</p> <p>3. ----- 도시공간본부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관한 다음 각 호의 -----</p> <p>----- 따라 -----</p> <p>----- 둔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도시공간본부장-----</p> <p>----- 도시계획과장-----</p> <p>----- 사람 중-----</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사람</p> <p>3. 기금-----</p> <p>-----</p> <p>③ -----</p> <p>-----</p> <p>----- 사무관이 맡는다.</p> <p>④ 위촉직 위원-----</p> <p>한 차례만 연임-----.</p> <p>-----.</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회의(이하</p>

현행	개정안
<p>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④·⑤ (생략)</p> <p>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u>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u>수당과</u>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u>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u></p> <p>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u>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회의”라 한다)는-----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⑦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u>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u> -----.</p> <p>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u>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u></p>

나. 검토 내용

“개정안 검토”

(1)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안 제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9년 12월 31일 ----- . -----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¹⁾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1) 서울특별시, 20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안내, 2024.5.10. (재정담당관-5630) : 원안가결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5년 연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금 관리·운용부서의 변경(안 제7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24.7월 서울시 조직개편(붙임1참조)에 따라 공공자산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로 이관²⁾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부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사무 중 ----- ----- 포함) 및 ----- ----- ----- ----- -----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1. -----	도시공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자산담당관	2. -----	도시계획과장	
3. 기금출납원 :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	3. -----	도시공간본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조직개편(24.7.1.字), 2024.7.15. (도시공간전략과-5588)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³⁾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시공간 본부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계획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에서 “도시공간 본부” 기금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변경(안 제9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24.7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공간본부장----- ----- 도시계획과장-----

3)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7., p.342.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현 행	개 정 안
<p>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 략)</p> <p>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p> <p>3. <u>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직접</u>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u>사무관</u>으로 한다.</p> <p>④ <u>위촉직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 <u>사람 중</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람</u></p> <p>3. <u>기금</u>----- -----</p> <p>③ ----- -----</p> <p>----- <u>사무관이 맡는다.</u></p> <p>④ <u>위촉직 위원</u>----- <u>한 차례만 연임</u>----- -----.</p>

- 「지방기금법」 제13조4)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시공간본부장”으로, 부위원장을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24.7월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8조제3항은 위촉된 위원을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9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단순히 연임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안 제11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일정과 안건의 통보 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 -----.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4.5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를 의뢰(공공자산담당관⁶⁾→법무담당관)한 결과,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⁷⁾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관리·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4.7월 서울시 조직개편 이전의 공공자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임

7)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답변, 2024.8.20.

< 심사결과 >

- ◆ (제11조제4항)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의 변경(안 제1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u>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⁸⁾)</p> <p><u>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u></p>

8) <자료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해촉(解囑) :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제척(除斥) :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기피(忌避) :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회피(回避) : 재판관이나 서기가 소송 사건에 관하여 기피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

- 현행 조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의 해촉 및 기피와 관련하여 규정해서는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심사 결과를 반영⁹⁾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붙임2참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기피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¹⁰⁾에 따라 각종 조례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함

9)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답변, 2024.8.20.

< 심사결과 >

- ◆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정비)

1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24.7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 자산 관련 업무가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에서 도시공간본부 도시 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회의 일정과 안건 통보 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관리·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도모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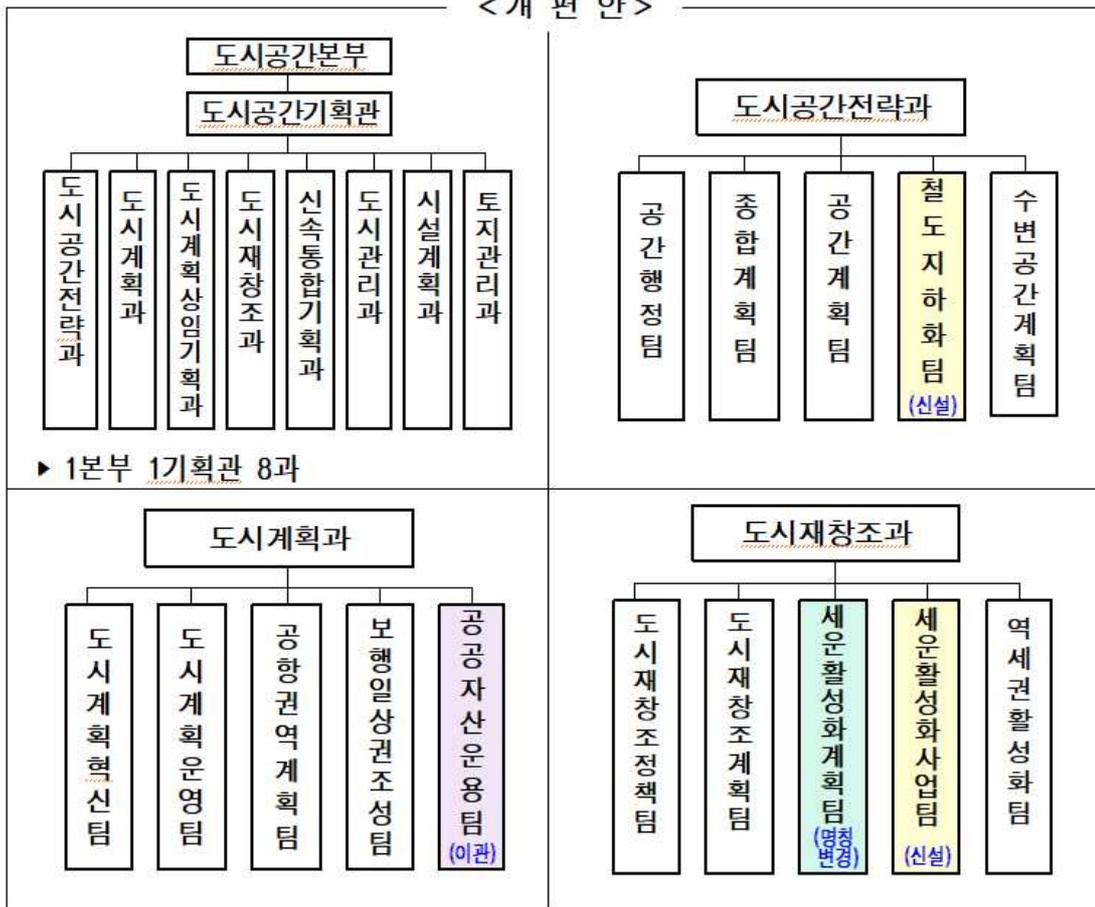
제목 도시공간본부 조직개편(24.7.1.호) 안내

- 1. 조직담당관-48767호(2024.5.10.)와 관련입니다.
- 2. 팀 신설 및 이관 등 도시공간본부 조직개편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편내용

- (팀 신설) 도시공간전략과 철도지하화 팀, 도시재창조과 세운활성화사업팀
- (팀 이관) 도시계획과 공공자산운영팀(←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팀 명칭변경) 도시재창조과 세운활성화계획팀(舊 세운지구활성화팀 명칭변경)

<개편안>



나. 시행일자 : 2024. 7. 1. 호. 끝.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37호, 2024. 7. 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 02-2133-6736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7]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